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264
----------	-------

발의연월일 : 2026. 4. 13.

발 의 자 : 조계원 · 김문수 · 홍기원  
안도걸 · 이광희 · 안호영  
복기왕 · 이개호 · 허성무  
최혁진 · 정진욱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의 소유자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가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관리단체로 지정이 되지 않은 관리자나 계약에 따라 관리를 수탁받은 자가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예를 들면, 국가지정유산 내에 위치한 학교 공유재산에 대하여 관할 지방교육청이 수리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방교육청이 현행 규정상 소유자나 관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국가유산수리업자 의뢰 의무가 적용되는지를 두고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수리 주체를 소유자·관리자, 관리단체로 규정함으로써 적용 범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다양한 유형의 수리 주체에 대하여도 적정한 수준의 국가유산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국가유산의 소유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를 포함한다(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유산의 소유자·관리자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 ⑥ (생략)	<u>지정된 관리단체</u> ② ~ ⑥ (현행과 같음)
------------	-----------------------------------